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채현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52호)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861호)
- 신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48호)
- 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12호)
- 전현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43호)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44호)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871호)
-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39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1. 채현일의원안	3
2. 김태선의원안	4
3. 신정훈의원안	6
4. 용혜인의원안	7
5. 전현희의원안	10
6. 이해식의원안	10
7. 위성곤의원안	11
8. 박주민의원안	11
III. 검토의견	13
1.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등	13
2.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관련	16
가. 대통령 궐위시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지정권자 지정(신정훈·용혜인의원안)	17
나. 보호기간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전문위원회의 심의절차 규정(김태선·신정훈·용혜인의원안)	20
다. 탄핵에 의한 대통령 궐위시 탄핵사유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보호기간 설정 금지 등(신정훈·전현희·이해식·위성곤의원안)	22

3. 전직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제한	25
4. 대통령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사고시에도 궐위시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9
5.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규정 정비	32
가. 대통령 궐위시 대통령기록물 폐기금지 의무화(채현일의원안)	32
나. 대통령기록물 재분류 및 보호기간 지정 관련(신정훈의원안)	35
다. 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의 설치(박주민의원안)	37
라. 기타 정비사항	39

I. 제안경위

1. 채현일의원안(의안번호 제2208152호)

가. 제 안 자 : 채현일의원 등 14인

나. 제 안 일 : 2025. 2. 13.

다. 회 부 일 : 2025. 2. 14.

2. 김태선의원안(의안번호 제2208861호)

가. 제 안 자 : 김태선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5. 3. 12.

다. 회 부 일 : 2025. 3. 13.

3. 신정훈의원안(의안번호 제2209448호)

가. 제 안 자 : 신정훈의원 등 25인

나. 제 안 일 : 2025. 3. 28.

다. 회 부 일 : 2025. 3. 31.

4. 용혜인의원안(의안번호 제2209612호)

가. 제 안 자 : 용혜인의원 등 14인

나. 제 안 일 : 2025. 4. 7.

다. 회 부 일 : 2025. 4. 8.

5. 전현희의원안(의안번호 제2209643호)

가. 제 안 자 : 전현희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5. 4. 8.

다. 회 부 일 : 2025. 4. 9.

6. 이해식의원안(의안번호 제2209644호)

가. 제 안 자 : 이해식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4. 8.

다. 회 부 일 : 2025. 4. 9.

7. 위성곤의원안(의안번호 제2209871호)

가. 제 안 자 : 위성곤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5. 4. 16.

다. 회 부 일 : 2025. 4. 17.

7. 박주민의원안(의안번호 제2210139호)

가. 제 안 자 : 박주민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4. 25.

다. 회 부 일 : 2025. 4.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채현일의원안(의안번호 제2208152호)

현행법은 대통령이 궐위되는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등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이 궐위 되는 경우 60일 이내라는 한정된 기간에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작업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의 누락과 멸실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이를 방지하기 위한 폐기 금지 결정의 권한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인 국가기록원장에게 있어 상급기관인 대통령비서실 등을 향해 긴급하게 폐기 금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금지에 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결정할 수 있기에, 국가 중요기록인 대통령기록물의 누락 없는 이관을 위해 필수 인력지원, 즉각적인 폐기 금지조치 등 법률적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한 대통령기록관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즉시 폐기 금지 및 현장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이 탄핵 등의 사유로 궐위되는 경우에도 국정운영의 핵심 기록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관하고, 대통령기록물의 무단 폐기 및 유출 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안 제20조의2).

2. 김태선의원안(의안번호 제2208861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최대 15년 또는 30년의 범위에서 열람·사본제작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모든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옮겨지는바, 관할 기록관을 상대로 진행중이던 정보공개 소송이 각하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탄핵된 대통령의 예산 집행 관련 기록물에 대하여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대통령기록물을 법원의 판결 및 정보공개 이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나.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의 예산 집행에 관한 대통령기록물은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이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함(안 제11조제6항).

다.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할 때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7조제1항).

3. 신정훈의원안(의안번호 제2209448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이동하거나 재분류하는 것을 금지

하도록 요구하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보호기간의 지정 권한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지정할 경우 범죄 및 사건 등의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한 및 재분류시기를 명확히 하여 대통령기록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나.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및 보호기간 지정 등을 기록물의 이관을 완료한 뒤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시행하도록 함(안 제20조의2제2항).

다.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통령기록물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이 탄핵에 의하여 궐위된 경우 탄핵의

직접적인 사유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은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4. 용혜인의원안(의안번호 제2209612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15년의 범위 이내로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별도의 심의 절차가 없어, 대통령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민감한 정보를 은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실제로 대법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한 것을 두고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한 바 있음.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소송에 따른 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이관, 보호기간 지정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보공개 결정이 내려진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으며,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직원명단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도 보호기간을

지정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

그 외에도 대통령의 사고로 인한 직무수행불능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조치 규정,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제한 규정 등이 부재해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심의 절차, 궐위 시 지정권자 등을 법률로 규정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보공개소송 중인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비공개 분류, 보호기간 지정을 제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대통령의 사고로 인한 직무수행불능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할 경우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나. 대통령 궐위 시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호기간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다. 대통령기록물이 정보공개소송의 대상이 된 경우에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비공개 분류 및 보호기간 지정을 제한함(안 제17조의

2 신설).

라. 대통령의 궐위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도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마.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을 받아 파면된 경우 등은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제한함(안 제18조제4항 신설).

5. 전현직의원안(의안번호 제2209643호)

현행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상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지정기록물 보호제도를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대통령이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경우, 파면된 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17조제1항),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해당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등).

6. 이해식의원안(의안번호 제2209644호)

현행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를 위하여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은 군사·외교·통일·대내외 경제정책·무역거래 등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로 한정해 정해져야 함.

그러나 헌법을 위반해 탄핵이 결정된 대통령의 경우 탄핵의 사유와 관련된 불리한 증거를 감추는 수단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탄핵에 의하여 궐위된 경우 탄핵의 사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의2).

7. 위성곤의원안(의안번호 제2209871호)

현행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생산한 기록물의 보호·관리 및 공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는 경우에 대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대통령이 파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사유와 관련된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공개를 제한하거나, 전직 대통령이 열람 권한을 악용할 우려가 있음. 또한 대통령 궐위 시 기록물 보관 및 공개 과정에서의 혼란과 공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헌법상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탄핵 사유 및 수사·재판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이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8. 박주민의원안(의안번호 제2210139호)

현행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보존을 위하여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대통령기록

물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및 해제를 심의·의결하도록 함(제20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등

개정안은 정보공개청구 소송이 진행중인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이관·비공개분류·보호기간 지정 등을 금지하고, 탄핵결정으로 퇴임한 대통령의 예산 집행 관련 대통령기록물은 감사원의 회계검사 이후 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김태선의원안 제11조제5항·제6항 및 용혜인의원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김태선의원안	용혜인의원안
제11조(이관) ① ~ ④ (생략) <신설>	제11조(이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행정소송 이 제기된 사항과 관련이 있는 대통령기록물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사실이 확정된 대통령기록물은 정보공개 이후 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행정소송 이 제기된 사항과 관련이 있는 대통령기록물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사실이 확정된 대통령기록물은 정보공개 이후 이관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에도 불구하고 「 공공기관의 정보공
<신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기록물관리기관”이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한다.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① 기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하고 기록물을 영구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소속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중 예산 집행에 관한 기록물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회계검사를 받은 이후 이관하여야 한다.	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항과 관련이 있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분류하거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다. 이 경우 대통령 임기 만료 후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전문위원회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비공개 분류 및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감사원법」 제22조(필요적 감사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4.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통령기록물 이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 관련 기록물은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거쳐 이관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구분	김태선의원안	용혜인의원안
정보공개 소송 진행 중인 대통령기록물	<u>법원의 판결 및 정보공개 이후</u> 대통령기록관 이관	
	-	<u>비공개 분류 및 보호기간 지정 금지</u> (대통령 임기만료 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可)
탄핵결정으로 퇴임한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예산 집행 관련 대통령기록물 → <u>감사원의 회계검사 이후</u> 대통령기록관 이관	-

다만, 정보공개청구 소송이나 감사원의 회계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기록물 이관 시기가 대통령 임기 만료 후 상당한 기간동안 늦춰질 경우 대통령기록물을 생산·관리하는 일부 기록물생산기관 및 관할 기록관이 사라지게 되어, 관리 및 이관 주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

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가. 대통령

나.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대통령직인수기관”이라 한다)

1의2. 제1호의 기록물 및 물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이 남용될 경우 다량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이관이 지연되어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리에 저해될 수 있다는 점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현 국가기록원장)이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분류 및 보호기간 지정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관련

개정안은 ① 대통령 궐위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보호기간의 지정권자를 보다 명확히 하고, ② 보호기간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나.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대통령선물[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2. “대통령기록관”이란 대통령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대통령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8조(전자적 생산·관리)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관(이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라 한다),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하여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관 설치가 곤란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보좌기관이 설치한 기록관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록관의 설치) ① 법 제9조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
2.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 그 밖에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기록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대통령 자문기관

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며, ③ 대통령이 탄핵된 경우 탄핵 사유와 관련된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보호기간 지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김태선의원안 제5조 및 김태선·신정훈·용혜인·전현희·이해식·위성곤의원안 제17조).

구분	현행	김태선 의원안	신정훈 의원안	용혜인 의원안	전현희 의원안	이해식 의원안	위성곤 의원안
대통령 궐위 시 보호기간 지정권자	대통령 관한대행	(현행과 같음)	대통령 기록관장	국가 기록원장	(현행과 같음)		
대통령 궐위 시 보호기간 지정 사전절차	<추 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 (단, 신정훈의원안은 궐위 시 限)					
대통령 궐위 시 보호기간 지정 불가사유	-	-			탄핵된 자의 수사기관의 범죄수사관 련 내용	탄핵 사유 관련 내용	탄핵 사유 또는 그 수사 및 재판에 중대한 관련 내용

가. 대통령 궐위시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지정권자 지정(신정훈·용혜인의원안)

현행법은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탄핵 등

의 사유로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보호기간 지정권을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이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음²⁾.

신정훈의원안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자에서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을 제외하고 대통령 기록관장을 대통령 궐위 시의 보호기간 지정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용혜인의원안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자를 변경하려는 것임.

현 행	신정훈의원안	용혜인의원안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① <u>대통령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① <u>대통령</u> (「대한민국헌법」 제7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① (생략)

- 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 가. 대통령
 - 나.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다.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대통령직인수기관”이라 한다)
 - 1의2. 제1호의 기록물 및 물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 나.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다. 대통령선물[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2. “대통령기록관”이란 대통령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대통령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개인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사적인 일기·일지 또는 개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등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의 사적인 기록물을 말한다.

나에 해당하는 대통령 기록물(이하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⑥ (생략)	1조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외한다)은----- ----- ----- ----- ----- -----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② 대통령 궐위 시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호기간을 지정한다. ③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는 보호기간 지정의 객관성·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대통령기록관장·국가기록원장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보호기간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서 전문위원회의 심의절차
규정(김태선·신정훈·용혜인의원안)

현행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을 대통령의 권한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심의절차를 두고 있지 않음.

김태선의원안과 용혜인의원안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함에 있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가 심의하게 하려는 것이고(안 제 17조제1항), 신정훈위원안은 대통령 궐위 시에 한정하여 보호기간을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현행	김태선의원안	신정훈의원안	용혜인의원안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이하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이하	① 대통령은 전문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① 대통령(「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외한다)은-----	①대통령은 전문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 할 수 있다.	----- ----- ----- -----.	----- ----- ----- --.	----- ----- -----.
제20조의2(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기록물 관리)	제20조의2(현행과 같음)	제20조의2(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기록물 관리)	제20조의2(대통령 궐위 및 사고 시 대통령기록물 관 리)
① (생략) ② (생략) <u><신설></u>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대통령기록관 의 장 은 대통령 이 궐위된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제1 7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 물의 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 다. 다만, 대통령 이 탄핵에 의하 여 궐위된 경우 탄핵의 직접적 인 사유에 관련 된 내용이 포함 된 대통령기록 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전문적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에서 보호기간 지정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는 국가안보·외교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탄핵에 의한 대통령 궐위시 탄핵사유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보호기간 설정 금지 등(전현희·이해식·위성곤의원안)

현행법은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정하는 데 있어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개정안들은 대통령이 탄핵에 의하여 궐위된 경우 등에 있어 탄핵의 사유가 된 헌법·법률위반과 관련되었거나, 수사 및 재판에 중대한 관련성이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게 하려는 것임. 전현희의원안은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파면된 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이해식의원안은 대통령이 탄핵에 의하여 궐위된 경우 탄핵 사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위성곤의원안은 탄핵사유 또는 그 수사 및 재판에 중대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게 하려는 것임.

② ~ ⑥ (생략)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탄핵 사유 또는 그 수사 및 재판에 중대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다. ③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된 경우 관련 기록물을 은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는 대통령기록물의 범위가 확대될 우려가 있고, 범죄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³⁾.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짧은 기간동안 많은 기록물을 이관하는 대통령기록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록물 중 탄핵 관련 수사·재판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을 특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3. 전직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제한

개정안들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의 열람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용혜인·위성곤의원안 제18조).

용혜인의원안은 재직중 ①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②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③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

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① ~ ③(생략)

④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2.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⑤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을 제작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적에 한정하여 이를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돌려받은 사본 또는 자료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른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④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재임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게 하려는 것이고 (안 제18조제4항 신설), **위성곤의원안**은 위 사유에 무단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열람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비밀인 사실을 누설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대통령기록물을 정치적 목적 등으로 활용하여 공공의 이익을 중대하게 해한 사실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인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신설).

현 행	용혜인의원안	위성곤의원안
<신 설>	재직 중 탄핵결정 을 받아 퇴임	
	금고 이상 의 형 확정	
	형사처분을 회피 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	
	대한민국의 국적 상실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 하여 형이 확정
		열람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비밀인 사실 을 누설하여 형이 확정
		대통령기록물을 정치적 목적 등으로 활용 하여 공공의 이익을 중대하게 해 한 사실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인

개정안들은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 열람 권한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현행	용혜인의원안	위성곤의원안
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등) ① 전직 대통령은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당선인 및 대통령 재임시 생산·접수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편의 제공에 관한 협의 진행상황 및 편의 제공의 내용 등을 문서로 기록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등) ① -----제17조제5항-----
1. 열람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 이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④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2.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1. ~ 3. (현행과 같음)

물은 제외한다.

3. 사본·복제물로 대통령기록물을 제공받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하는 것

② · ③ (생략)

<신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2. 재직 중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4.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체류 또는 보호를 요청하거나 요청하려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형이 확정된 경

		온 6. 제1항에 따라 열람한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비밀인 사실을 누 설하여 이 법 또는 다 른 법률에 따라 형이 확정된 경우 7. 대통령기록물을 정치 적 목적 등으로 활용 하여 공공의 이익을 중대하게 해한 사실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인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직 대통령 본인이 생산한 기록물 전체에 대한 열람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제한 사유가 전직대통령 본인이 생산한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제한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통령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사고시에도 궐위시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용혜인·박주민의원안)

용혜인의원안은 대통령 궐위 시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 목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 사고로 인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적용

되도록 하려는 것이고(용혜인의원안 제20조의2제1항) , 박주민의원안은 대통령 궐위시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등의 금지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박주민의원안 제20조의2제2항).

현행	용혜인의원안	박주민의원안
제20조의2(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제20조의2(대통령 궐위 및 사고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제20조의2(대통령 사고 또는 궐위 시 대통령 기록물 관리)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 관의 장은 대통령이 궐 위된 경우 즉시 이관 대 상 대통령기록물을 확인 하여 목록을 작성하는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하며, 「공직 선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기 대통 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관을 완료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대통 령기록관의 장은 인력 지원 등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 ----- ----- ----- ----- -----. ----- ----- ----- -----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이 <u>궐위</u> 된 경우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등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점검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② ----- -----사 고 또는 궐 위----- ----- ----- ----- ----- ----- ----- ----- -----.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즉시 시행한다.
-----------------------------	-------------------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한 대통령의 유고상황을 궐위와 사고로 구분하고 있음⁴⁾.

일반적으로 궐위는 ①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사망 또는 사임하여 대통령직이 비어있는 경우, ②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③ 대통령 취임 후 피선거격의 상실 및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하고, 사고란 대통령 재임 중 신병·해외여행

4) 「대한민국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 경우를 말함⁵⁾.

개정안들은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로 사고상태가 된 경우에도 대통령 궐위시와 동일하게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 목록 작성,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등의 금지를 요구조치 등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통령 기록물이 유실·멸실 없이 이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대통령이 사고상황인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탄핵소추가 의결된 경우가 아닌 사고상황도 이동 및 재분류 금지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이관 대상 기록물 목록 작성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 여부와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5.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규정 정비

가. 대통령 궐위시 대통령기록물 폐기금지 의무화(채현일의원안)

채현일의원안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관장에게 대통령기록물 등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통보받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등이 폐기·유실되지 않

5) 성낙인, 『헌법학』 제20판, 법문사, 2020, 559면.

도록 조치하고 관리하게 하며,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위 조치와 관리실태를 확인하게 하고 시정조치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현 행	채현일의원안
제20조의2(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① (생략) ② (생략) <u><신설></u>	제20조의2(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u>관리 등</u>) ①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보호·보존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 준하여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금지 조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폐기 금지를 통보받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해당 대통령기록물이 폐기·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3.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2호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금지 조치 및 관리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한 기록물관리 현황조사 또는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현황조사 또는

<신 설>	<u>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u> ④ 제3항의 폐기 금지와 현황조사 등의 대상은 제2조제1호의 대통령기록물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대통령기록관장에게 폐기조치 금지 의무를 부여하여 기록물이 유실되거나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구분		현행 「공공기록물법」 ⁶⁾	채현일의원안
폐기 금지 조치	실시 주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국가기록원장)	대통령기록관장
	내용	폐기금지조치 및 통보 실태점검 및 시정조치	(현행과 같음)
폐기금지조치 대상기관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⁷⁾
대상 자료		「공공기록물법」상 <u>기록물</u>	대통령기록물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

-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3.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移管)·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4. “기록물관리기관”이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

다만, 개정안은 폐기금지 조치의 대상을 대통령기록물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로 정하고 있는데, 해당 범위가 적절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나. 대통령기록물 재분류 및 보호기간 지정 관련(신정훈의원안)

신정훈의원안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한 후 대통령기록관장이 재분류 및 보호기간을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2항).

현 행	신정훈의원안
제20조의2(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① (생략)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등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점검	제20조의2(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한다.

5.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한다.
- 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 가. 대통령
 - 나.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다.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대통령직인수기관”이라 한다)
- 제8조(전자적 생산·관리)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관(이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라 한다),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하여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 ----- -----, 이 경우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및 보호기간 지정 등은 제1항에 따라 이관을 완료한 뒤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시행하여야 하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이 권위된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탄핵에 의하여 권위된 경우 탄핵의 직접적인 사유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통령기록물을 재분류하거나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하는 등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권위된 경우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기 전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분류 및 보호기간 지정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대통령기록물의 투명한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구분		현행	신정훈의원안
대통령 결위 시	재분류 ⁸⁾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실시 (대통령기록관장 금지 요구)	대통령기록관장이 실시
		이관 전 실시	이관 후 실시 명문화
	보호기간 지정	대통령기록관 이관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실시	대통령기록관 이관 후 전문위원회 심의거처 대통령기록관장이 실시 (단, 탄핵과 직접 관련 있는 경우 불가)

다만, 대통령기록관장이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보호기간 지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의 취지상 적절한 것인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가 보호기간 지정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의 설치(박주민의원안)

박주민의원안은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 대통령지정 기록물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9명의

- 8) “재분류”는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분류와 ②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분류로 구분되는데, ①에 따른 재분류는 공공기관(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 관할 기록물관리기관(대통령기록관)에게 기록물을 이관하기 전 그 공개여부를 다시 분류하는 것이며, ②에 따른 재분류는 대통령기록관장이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 후 5년이 지난 후 공개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함. 개정안에서 문제되는 재분류는 ①에 따른 재분류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① 공공기관은 관할 기록물관리 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하기 전 최근 5년의 기간 중 해당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한 경우에는 공개 여부 재분류 절차를 생략하고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다.

위원으로 구성하고, 9명의 위원은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 관련 학회가 각각 3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정하며, 심의·의결 내용은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박주민의원안 제20조의3 신설).

현 행	박주민의원안
<신 설>	제20조의3(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 ①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9명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 관련 학회가 각각 3명의 위원을 추천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은 공개한다. ⑥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권한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대통령기록물의 중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입법부·사법부·행정부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해제하게 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외교적·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생산을 보장하고 무단과기·반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대통령기록물 지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지정기록물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탄핵소추가 의결된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탄핵소추의결만으로 대통령의 기록물 지정·해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라. 기타 정비사항

현 행	채현일의원안	위성곤의원안
제20조의2(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 관의 장은 대통령이 궐	제20조의2(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등) ① ----- -----	제20조의2(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① ----- -----

위된 경우 즉시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하여 목록을 작성하는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관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인력 지원 등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지원하여 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지원하여 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채현일·위성곤의원안은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관장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대통령기록물 이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대통령기록관으로의 신속한 기록물 이관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대통령기록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안 제20조의2제1항).

② 전현희·이해식·위성곤의원안은 대통령이 탄핵결정으로 파면·궐위된 경우 탄핵사유와 수사 및 재판에 관련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현행	전현희의원안	이해식의원안	위성곤의원안
제20조의2(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기록물 관리) ① (생략) ② 대통령기록관 의 장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생 산기관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등의 금지를 요 구하고 현장점검 을 하는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 물생산기관의 장 은 이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기록물 관리 및 공개) ①·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기록물 관리 및 공개) ①·② (현행과 같음)	20조의2(대통령 궐 위 시 대통령기 록물 관리) ①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이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파면된 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공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이 탄핵결정에 의하여 궐위된 경우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탄핵의 사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공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이 탄핵결정에 의하여 궐위된 경우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공개할 수 있다. 1. 대통령 탄핵사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기록물 2. 탄핵결정을 받은 대통령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중대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를 통해 원활한 수사·재판절차 진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공개할 수 있는 기록물의 범위가 다소 넓은 것은 아닌지, 대통령기록관장에게 기록물 공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